



의사의 의무

가톨릭의대 교수

전 중 회

의사의 의무를 언급함에 있어 다음 몇가지 항목을 들 수 있다.

1. 진료의 의무

의사에게는 「근무의」라는 관념을 가질 수 없는 직업적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나 환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마련이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의사의 직업적 이념을 어기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료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상의 지식과 실천상의 능력을 박애정신에 입각하여 널리 인류에 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계층이나 종족이나 종교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이점에 있어서는 보편성(universalism)을 띠어야 한다. 물론 의사의 진료행위의 대상과 범위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병든환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으나 의사의 진료행위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며 늘 주관적인 조건부의 제한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사가 모든 종류의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지도하기에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제한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원칙으로서는, 의사의 진료행위는 모든 환자에게 그 요구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환자나 그 친척의 진료의뢰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절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더라도, 예외적인 것이다. 전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도 사절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료인들이 직업선택과 함께 얻어진 「위험」인 것이다. 귀찮은 야간왕진같은 특히 환자의 정신적인 불안 때문에 호출하는 따위의 왕진의뢰에도 이쪽에서

의 설득이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이 「숙명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인간애와 의사로서의 정열로써 이 괴로움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로써 현재까지 인정되어 왔다. 완숙한 인간형성이라는 것은 미덕 즉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의료행위의 이상적 목표는 종교적인 사명감과 같은 의료윤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환자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의무

이 신중의 의무는 위 (1)의 진료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의 법률상의 성격과 의사로서의 윤리적 특성의 두가지 원칙에 기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사는 자기의 최상의 지식 능력 양심에 따라 또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행사할 것이며 특히 이것을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불법의 규범인 것이다. 즉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또는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환자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봉사할 것이며 모든 행위가 주의깊게 신중히 행사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의사의 부주의나 신중치 못한 의료행위로서 생긴 환자의 돌발적 손해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법적인 책임의 의미에도 신중을 다하지 못한 의무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더욱 중대하다고 하겠다. 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태만」인 경우 법적으로는 배상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 신중 진료의 의무에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문제는 기

능적특수성 (Functional Specificity)을 지히는 문제 즉 기능적분분을 지혀야 된다는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문적특수진료기술도 없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특수 수술같은것을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에서나, 수입을 올리겠다는 물욕에서 감행한다는 것은 우선 윤리적인 면에서 규탄 받아야 할것이다. 자기 지식이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양심의 발동이 있을때에는 모름지기 빨리 전문의에게 소개하여 환자로 하여금 그의 치료를 받도록하게 함이 의료윤리상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의사는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치료이외에도 환자에 대하여 자신의 총역량을 동원하여 심리적이고 또 사회학적인 고려에서 환자의 괴로움이나 욕구를 최대한으로 들어주어야 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괴로움이나 아픔을 참고 견디어주기를 기대하나 환자는 심리적으로 의사에게 의존하기 싫어함으로 그 괴로움을 확대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음이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의사는 환자의 이 기대 (role expectation—모든 환자는 의사에게 너무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에 충족을 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사회학자들의 용어를 빈다면 의사와 환자와의 교섭단절 (Communication gap)이나 무언사회 (Wordless society)의 결함을 없이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것이다. 과거에서와 같은 의사의 권위의식을 나타낸다가, 환자가 모르는 용어, 예를 들어 upper G I (어퍼 지 아이)를 하자거나 Stomach ulcer (스토막 얼서)이니 수술을 하자거나 하는 따위의 환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의사들은 무의식중에 짓거리게되는데 이런것들이 환자의 협력과 이해를 얻게되지못하여 조기 치료나 수술을 못하게되어 치료성적을 나쁘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하고 있다. 우리가 치료하여야 될 환자를 구수한 소리를 하는 돌파리의사나 한의원에게나 또는 엉터리 치료사에게 환자를 넘겨주게되는 결과가 되니 윤리적인 면에서나 의사의 사회학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때에 책임이 없다 할수 없으며 환자를 신중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과오를 면키 어렵다고 하겠다.

3. 의료자재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의무

병원근무자가 무분별 부주의 무관심 또는 안일한 생각에서 병원의 자재를 부당하게 사용한것에 대한 윤리적동찰이 또한 있어서 옳다고 본다. 물질적변상 이상으로 윤리적동찰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병원근무자들 (의사를 포함한)은 심심한 고려가 있어야 될줄 믿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근무자는 실혹 문서에 의한 계약에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직위에 취업함과 동시에, 묵약중에 매월의 보수를 받음과 함께 병원 근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약속하였다고 보기때문이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병원자재에 손해를 입히게 하는 근무자는 그것이 발견되던가 아니되던가에 관계없이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병원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 병원자재의 남용이나 손해에 대하여서, 대단히 관대한 입장에서 이 문제가 처리됨이 바람직하다. 병원관리자와 근무자와의 사이는 특히 병원사회에서는 가정적분위기와 협조적상호관계가 이루어야함이 옳음으로, 피의자의 심문이나 형책을 관습적으로 하게 될때에는 근무의욕이 없어지고 불필요한 정력과 시간의 낭비만을 조장하므로 어데까지나 병원관리자는 관대한 태도가 필요하며 그것으로써 윤리적교양이 높은 의료인들은 신중한 태도로 자연히 개선될것이다. 근무자는 병원관리자의 선의와 관대한 태도를 인정하여 일층 세심한 주의와 병원을 위한 배려로써 근무함이 윤리적으로 옳은 태도하고 하겠다.

또 많은 병원에서 봉대 약제 기계따위가 소량이지만 의료인들의 개인적목적으로 사용되는 나쁜 습관이 유행되고 있는바 윤리학자에 의하면 윤리적으로 허용될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가벼운 절취행위」에 대하여서도 의료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위가 관공립병원이나 봉급이 저렴한 기관에서 무의식중에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실을 또한 병원관리자도 깨달아야 할것이다. 이것이 정당하다거나 변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거론하는것

은 물론 아니다.

4. 충고 고발의 의무

미국의사회가 의사의 의무라고 간주하는 원칙에 「의사는 동료의 무능력이나 타락된 태도 또는 불성실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하여 두려워함이 없이 또는 비호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고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이라던지, 도이취법정에서의 판결문의 한 구절 「비윤리적 사생활은 의사로서의 직책에 위배된다」라는 사고방식에 우리 의료인들은 깊은 고려가 있어 마땅하다 하겠다. 냉정하다는 생각이 풍기는 이 충고나 고발의 의무는 선의로 보아서 「인간 서로의 책임, 즉 동료의 도덕적건강과 성장에 대한 인간적 공동책임」이라는 따뜻한 동기에서 나온다는 사고방식을 인정하는데서 어느만큼 이해할수 있다. 실제에 있어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상대방이 받아드릴수 있을만한 경우에는 충고를 할 것이며 고발마저도 선의의 충고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 의료인을 돕고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사에서 발동할때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충고의 의무가 인간적인 취약성(약점) 때문에 이행되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고발에 있어서는, 고발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발의 필요가 있는가, 그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불순한 동기가 판단을 그릇친 것이 아닌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 고발이 질투 혐오 그외의 다른 동기로서 행하여졌다거나 또는 중대한 윤리적과실을 예방하는 이의의 목적으로 남용되었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할뿐 아니라 악질행위로 규정지을수 밖에 없다.

충고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의 상치가 없는 바는 아니다. 의사로서의 직업한계를 넘어서 의사의 사생활의 윤리적 문제에 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충고나 고발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대의 시대사조는 어느정도 고전적인 히포크라테스 유의 윤리적사고에 받기를 들기도하다 많은 윤리학자는 「의료인의 직업은 특수한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양심과 책임을 요구받게된다」고 하여 그 윤리적전통을 내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직업적생활과 사생활을 분리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의료의 본질상 「직업적활동의 내외에 있어, 그 직업이 요구하는 존경과 신뢰에 부합되는 태도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해리될때에는 우리의 후배인 의학생중에 긴 연구생활의 정신적부담이나 또는 참된 인류애의 기쁨에 참여하여 직업에 종사하려는 일군이 적어질것이고 히포크라테스에 따라서 의료의 전면적인 윤리적가치의 실현에 힘쓰려는 의료인이 적어질터이니 결과적으로 의료의 본질의 변태가 올것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따라서 허용하기 싫지 않다는 주장들이 세다. 이제까지의 의사의 윤리적전통은 의사와 인간과를 하나의 통일체로 보려는 사고가 뚜렷하다. 즉 윤리적 요청은 직업수행자로서의 의사에 뿐만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사에게도 확실히 가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의학과 윤리를 다루는 마당에서 우리의료인의 의무는 힘들고 무겁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런 전통적인 윤리관이 보전됨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믿게 된다.

5. 보습교육의 의무

의사가 졸업후에도 계속 발전되는 의학지식을 얻고 향상된 의료기술을 습득하여야하는 연수 교육을 지속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케되는 제 1의 이유는 현대적의료수준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보증을 주는것을 뜻하는데 있고 또 제 2의 이유는 의료활동의 대상이 인간생명 그 자체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있는 일의 하나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인간생명이 문제되고 있는 곳에서는 「의학적무지는 범죄이다」라고 까지 말할수 있다.

만약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치료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가 5년간 학문적지식을 탐구하는데 게을리 하였다면 그는 이미 의사로써 적절한 바른 치료를 할수 없는것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볼수없는 것이다. 「의사는 의학의 진보를 알의무가 있다」는 간단한 표현이지만 중대한 뜻을 지닌 이 구절에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수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의 실제의 진보를 자기지식으로 간직하고

진료에 그것들을 가능한 한 활용한다는 학문적인 노력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문적 노력 없이 올바른 진료활동을 할수있을 의료인의 존재를 우리들은 인정할수 없는 것이다.

의사가 전문교육을 끝내고 졸업후 보수교육에도 열성을 내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오진하여 환자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하여도 윤리학자들은 이 의사에게 개인적 책임은 없다고 보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나라 의학협회에서 제정한 「의사의 윤리」는 참으로 훌륭한 것이라 인정되며 우리 의료인들은 자주 자주 되새겨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는 일을 탐구하고 실천함을 본직으로 삼는다. 의사는 그 직무의 본질상 인류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에 투철하여야 하며 지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10 개항) 윤리를 준수 할것을 서약한다.

1. 의사는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수준의 의학적실력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

(중 략)

1. 의사는 도덕양양과 지적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선서와 세계의학협회의 제네바선언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 대한의학협회가 제정한 의사윤리의 알파와 오메가는 지식향양에 있다는 주장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14 회 세 미 나 안 내

주 제 : 의 학 윤 리

날자 : 1975. 11. 7~8

장소 : 유성관광호텔(대전)

<11월 7일(금)>

2:00~2:20 개회식

2:30~3:00 의한윤리의 근본원리.....김창렬신부(가톨릭중앙의료원장)

3:10~3:40 생명의 존엄성.....김영제교수(가톨릭의대 학장)

3:50~4:20 외과의의 윤리.....김희규교수(성모병원)

4:40~5:10 정신의학과 의학윤리.....김중은교수(가톨릭정신건강연구원장)

5:20~5:50 임종의 의료.....김학중교수(성모병원장)

<11월 8일(토)>

9:00~9:30 약과 윤리.....조규철교수(가톨릭의대)

9:40~10:10 의사의 임무.....전종취교수(성모병원)

10:20~10:50 특강: 의료보전정책박승함(보건사회부차관)

10:50~11:10 임시총회(보고사항 기타)